

< 별 지 >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19호 및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가계성 일반손해보험”이란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일반손해보험을 말한다.

20. “기업성 보험”이란 가계성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일반손해보험을 말한다

제4-15조제2항 중 “원수보험료를”을 “월납기준 원수보험료(총 원수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보험료)를”로 한다.

제7-6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7-12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 등 재보험 관리에 필요한 기준의 수립 및 변경

제7-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2조의2(재보험의 관리) ① 보험회사는 영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재보험 계약과 관련한 재무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재보험 위험관리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관리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보험회사의 자본관리계획, 위험관리 기본방침, 사업규모, 위험의 특성, 위험의 감내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재보험 계약과 관련된 계약서류 및 합의내용 등 일체의 자료

및 정보를 문서화(자기테이프·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한 서류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재보험 위험관리전략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감독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보험 위험관리전략의 수립 및 운영, 재보험계약 관련 자료 및 정보의 관리, 내부통제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절차 및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 보험회사는 보험위험의 인수 및 보유에 따른 비용 등 합리적인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개별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 제외)의 계약별로 인수한 보험위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험관리위원회가 보험계약의 특수성, 위험분석, 회사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험위험을 100분의 10 이상 보유하는 것이 어렵다고 결정하는 경우
2. 재보험 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가 당해 재보험 계약에 대해 다시 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⑥ 제5항의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원수보험료에서 재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이 원수보험료의 100분의 10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⑦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법 제17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영 제63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회사(이하 “적격 재보험사”라 한다)의 목록을 작성·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감독원장은 보험회사가 적격 재보험사의 목록을 활용하는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48조제2항 중 “제7-73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기업성보험은” 을 “제7-73조제2항 단서 제1호 및 제4호(기업성 보험에 한정한다)는” 으로 한다.

제7-64조제1호 중 “제7-73조제2항 단서 각 호에 따른 보험” 의 경우에는 보험요율 등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제7-73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종전의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 을 “제5항” 으로 하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산출한 보험요율 등을 통해” 를 “통계요율 이외의 보험요율을 산출하여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경우에도” 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요율 이외의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다.

1. 기업성 보험
 2. 가계성 보험 중에서 국내의 보험통계 등이 부족하여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보험상품의 판매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통계요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3. 제4-4조의2에 따라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
 4. 제1호 및 제3호의 보험에 대해 제7-79조의3제2항의 내부통제기준에서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참조순보험요율을 할인 또는 할증하는 경우
- ③ 보험회사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재보험자와 협의 등을 거쳐 제공받은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재보험자순보험료(보험회사간에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당해 재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출재보험료로서 원수보험료에서 재보험출재수수료 등 사업비를 차감한 보험료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9-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의4(기업성 보험의 위험평가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법 제176조제5항 및 제7-79의3제1항에 따라 집적한 보험요율 및 경험실적 등 보험 관련 통계를 분석하여 기업성 보험의 손해율 등 사고발생 위험을 분석한 보고서(이하 “기업성 보험 통계 분석보고서” 라 한다)를 작성하고 매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험회사가 기업성 보험의 순보험료 산출 및 제7-79조의3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위해서 제1항에 따른 기업성 보험 관련 통계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 그 통계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기업성 보험 위험평가정보시스템” 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정보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9-5조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10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위에” 를 “감독원장에게” 로 하고, 제3항 중 “금융위원회에” 를 “감독원장에게” 로 한다.

별지 7의4 보험대리점등록신청서(법인) 첨부서류 4. 중 “임직원 명부(법 제91조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제외한다)” 를 “임직원 명부(법 제91조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및 영 제30조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제외한다)”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5조제2항 개정규정은 2019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48조, 제7-64조, 제7-73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작성·변경되는 기초서류로서 판매개시일이 이 규정 공포일 이후인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정의) (생략)	제1-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18. (생략)	1. ~ 18. (현행과 같음)
19. (신설)	19. “ <u>가계성 일반손해보험</u> ”이란 <u>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일반손해보험을 말한다.</u>
20. (신설)	20. “ <u>기업성 보험</u> ”이란 <u>가계성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일반손해보험을 말한다.</u>
제4-15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판매비중 제한 등)	제4-15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판매비중 제한 등)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비중은 생명보험상품 및 장기손해보험상품의 경우, 신규로 모집된 계약의 월납기준 초회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그 밖의 손해보험상품은 신규로 모집된 계약의 <u>원수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출한다.</u>	② ----- ----- ----- ----- ----- ----- ---- <u>월납기준 원수보험료(총 원수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보험료)를 --.</u>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7-6조(위험관리조직) ① 보험회사의 이사회는 위험관리에 관	제7-6조(위험관리조직) ① ----- -----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험관리위원회에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 6. (생략)

7. < 신설 >

②·③ (생략)

< 신설 >

< 신설 >

1. ~ 6. (현행과 같음)

7. 제7-12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 등 재보험 관리에 필요한 기준의 수립 및 변경

②·③ (현행과 같음)

제7-12조의2(재보험의 관리) ① 보험회사는 영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재보험 계약과 관련한 재무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재보험 위험관리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관리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보험회사의 자본관리계획, 위험관리기본방침, 사업규모, 위험의 특성, 위험의 감내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재보험 계약과 관련된 계약서류 및 합의내용 등 일체의 자료 및 정보를 문서화(자기테이프·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한 서류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신 설 >

③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재보험 위험관리전략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신 설 >

④ 감독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보험 위험관리전략의 수립 및 운영, 재보험계약 관련 자료 및 정보의 관리, 내부통제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절차 및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신 설 >

⑤ 보험회사는 보험위험의 인수 및 보유에 따른 비용 등 합리적인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개별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 제외)의 계약별로 인수한 보험위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험관리위원회가 보험계약의 특수성, 위험분석, 회사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험위험을 100분의 10 이상 보유하는 것이 어렵다고 결정하는 경우
2. 재보험 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가 당해 재보험 계약에 대해

< 신 설 >

제7-48조(공통사항 신고기준) ①
<삭제 2016.9.27>

② 제7-73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기업성보험은 영 별표6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7-64조(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필수 기재사항) (생
략)

1.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보
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등 현
금흐름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보
험계약의 경우(법 제108조제1항

다시 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⑥ 제5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원수보험료에서 재보험료를 차감
한 금액이 원수보험료의 100분의
10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⑦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법 제
17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영 제
63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
당하지 않는 보험회사(이하 “적
격 재보험사”라 한다)의 목록을
작성·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감독원장은 보험회사가
적격 재보험사의 목록을 활용하
는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48조(공통사항 신고기준) ①
<삭제 2016.9.27>

② 제7-73조제2항 단서 제1호 및
제4호(기업성 보험에 한정한다)는
-----.

제7-64조(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필수 기재사항) (현
행과 같음)

1. -----

(보험상품의 판매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통계요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3. 제4-4조의2에 따라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

4. 제1호 및 제3호의 보험에 대해 제7-79조의3제2항의 내부통제기준에서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참조순보험요율을 할인 또는 할증하여 적용하는 경우

③ <신 설>

③ 보험회사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재보험자와 협의 등을 거쳐 제공받은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재보험자순보험료(보험회사간에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당해 재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출재보험료로서 원수보험료에서 재보험출재수수료 등 사업비를 차감한 보험료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③·④ (생략)

④·⑤ (종전의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⑤ 보험회사가 제4항 단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위험률을 20%까지 추가 할증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보험금이 20%까지 추가 할증한 위험보험료보다

⑥ ----- 제5항 -----

작을 경우, 할증전 위험보험료와 실제지급보험금 중 큰 금액과 20%까지 추가 할증한 위험보험료 간 차액의 50%이상을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적립금 가산, 보험료 할인 및 보험금 증액 등의 방식으로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

⑥ 보험회사는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산출한 보험요율 등을 통해 동질의 위험을 가진 보험계약자 간에 보험요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

⑦ (생략)

< 신설 >

< 신설 >

< 신설 >

⑦ -----
-- 통계요율 이외의 보험요율을 산출하여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경우에도 -----

⑧ (중전의 제7항과 같음)

제9-5조의4(기업성보험 위험평가 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법 제176조제5항 및 제7-79의3제1항에 따라 집적한 보험요율 및 경험실적 등 보험 관련 통계를 분석하여 기업성 보험의 손해율 등 사고발생 위험을 분석한 보고서(이하 “기업성 보험 통계 분석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매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험회사가 기업성 보험의 순보험료 산출 및 제7-79조의3제2항에 따른 내

1. ~ 2. (생략)

③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가 법 제192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기간 중 그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③ -----

----- 감독원장에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보험과
연락처	02-2100-2962